

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조성태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 ‘고충처리위원회’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 기회를 확대하고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~제4조).
-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~제8조).
-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.
-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0조~제12조)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,
- 이에 근거하여 “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)의 설치와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【참고】

-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제정일	15.10.8.	-	17.9.11.	22.2.24.	21.7.23.	-	22.9.10.	23.12.18.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24.7.18.	12.8.3.	15.7.30.	19.6.7.	18.12.31.	-	25.2.4.	22.6.30.

나. 주요 조문의 검토

- ‘안 제4조’는 “위원회의 기능”으로, ▲위원회에 신청한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, ▲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, ▲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, ▲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, ▲민원사항에 관한 안내,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, ▲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, ▲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

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, ▲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·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, ▲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등 9개 사무를 규정함.

- 본 조는 법 제32조제2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정이므로, 법문의 표현에 맞게 제목을 “위원회의 업무”로 하고,
- 위원회의 업무는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법문에 정해진 업무 외에는 조례에 따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, “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다.”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.

○ ‘안 제5조’는 제1항에서 국민의 고충민원 신청 권리와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의무를, 제2항에서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규정함.

- 제1항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, 고충민원의 신청 주체와 처리 주체는 서로 다르므로 별도의 항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.
- 제2항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) 제42조제1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이나, 영과 달리 처리기간 연장 시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【참고】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2조(고충민원의 처리기간) ① 권익위원회*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**60일 이내**에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**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**할 수 있다.

* 영 제35조에 따라 영 제42조가 포함되는 “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”에서 “권익위원회”라는 용어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미함.

- ‘안 제6조’는 제1항에서 “10명 이내”의 위원으로 구성됨을,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법 제33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.
- 위원 수와 관련하여, 다른 시·도가 대체로 7명 이내 또는 10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, “10명 이내”로 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【참고】

- 우리 도를 제외한 다른 시·도의 위원 수 규정은 아래와 같음.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위원 수	3명 이상 7명 이내	조례 미제정	규정 없음	10명 이내	7명 이내	조례 미제정	5명 이내	7명 이내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위원 수	7명	10명 이내	10명 이내	10명 이내	15명 이내	조례 미제정	7명 이내	10명 이내

- ‘안 제9조’는 제1항에서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를, 제2항에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, 제3항에서 제척·기피·회피 위원의 재직 위원 제외를, 제4항에서는 회의 비공개 원칙을 각각 규정함.
- 제1항은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원칙과 예외, 그리고 임시회의 개최에 관하여 같은 항에서 함께 정하고 있으나,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규정의 대상이 다르므로 별개의 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.
 - 제3항은 제척·기피·회피의 근거 조문은 법 제18조로 하고 있으나, 안 제8조에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르는 것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, 근거 조문을 안 제8조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도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, 향후 전담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